
2023년도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
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과제공고 제안요청서(RFP)

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과제 제안요청서(RFP)

제안요청서명 (세부사업명)	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(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)	공모 유형	품목 지정형	기술료 납부대상	X
공모유형	해당사항 없음				
기획시 참조사항					

▶ 지원목적

- 영국 등 주요 협력국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 간 제약, 의료기기, 재생의료, 디지털헬스케어, 우주의학 등 보건의료분야 공동연구 지원을 통한 양국 연구자 간 연구 협력 활성화, 미래 유망기술의 효율적 확보 및 국내 연구경쟁력 향상 도모

▶ 지원대상

- 주관연구기관은 국내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※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복수로 구성 불가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협력국가	지원분야	지원기간	연간 연구개발비 (1차년도)	선정 예정 과제수
영국	한-영 바이오헬스 국제공동연구	3년 이내	500백만원 이내 (250백만원)	2

※ 1차 년도 연구기간은 및 연구비는 6개월 이내로 산정(괄호 예산)하여 지급

※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(안)

지원분야	성과목표	연구내용(예시)
한-영 바이오헬스 국제공동연구	- 연구자가 제시한 마일스톤 달성도(%) - SCI(E)급 분야별 IF 상위 10% 이내 1건과 상위 25% 이내 2건, 총 3건 이상	바이오헬스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 * (예시) 제약, 의료기기, 재생의료, 디지털헬스케어 등

※ 최소 1건 이상의 논문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책임자와 상대국가의 연구책임자가 모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함

※ 그 외 추가 성과를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

▶ 특기사항

-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(3책5공)에 해당함
- 대상국가의 협력연구자(기관)은 **연구개발계획서 상에 공동연구개발기관 형태가 아닌 '연구개발 기관 외 기관'**으로 명시하여 참여해야 함
 - 해외 연구책임자는 해당 국가의 인가를 받은 산·학·연·병 소속 연구자여야 하며, 국내 소재 연구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
- 연구계획서 작성 시, **해외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대한 기여부분(현금/현물 등), 국내·외 기관 간 공동연구 역할부담계획, 기관 간 연구성과 분배방안**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제시

-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시, 협업 예정인 해외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 연구책임자가 명시되어있고 해외협력기관과의 구체적인 기술협력, 역할분담 등이 반영된 공동연구 수행 증빙자료(계약서, 협약서, MoU 등) 사본 제출
 -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**계약서(MOU, LOI, MOA 등 불인정)가 있는 경우에만 ‘국제공동연구개발비’ 사용 가능**(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)
 - 최종산출물의 프로파일(Target Product Profile)과 기술성숙도(TRL)에 근거, 연구 기간 종료 시점에 측정·평가 가능한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마일스톤(milestone, 정량지표) 제시
 - 기존 국제협력(교류협력, 공동연구 등)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, 본 사업과의 성과 연계·확대 방안 제시
- 동 ‘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’ 내 지원 분야에 관계없이 **동일 주관연구책임자 기준 1개 과제만 선정**

<’23년도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 신규지원 과제>

사업명	RFP	지원 분야
글로벌 연구협력지원	글로벌공동연구지원 (국내연구자 단독 지원)	한-미 우주의학 국제공동연구
		한-미 바이오헬스 국제공동연구
		한-스위스 바이오헬스 국제공동연구
		한-영 바이오헬스 국제공동연구
	글로벌 바이오헬스기업 연구협력지원 (국내 연구자 단독지원)	한-로슈 의료기기·의약품 연구협력
		한-노바티스 의약품 연구협력
	한-영 기관협력형 국제공동연구지원 (매칭펀드 과제)	한-영 디지털헬스 국제공동연구지원

- 최종평가는 과제 종료 후 1년간의 성과등록기간을 거쳐 실시(최종보고서는 과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)
- 일반적인 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·관리 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」 참고

▶ 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
해당사항 없음	
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 항목	소 항목
서면 · 구두평가	1. 연구계획의 적절성(30)	○ 사업목적과의 부합성(10) - 제안요청서(RFP)의 목표와 지원내용에 부합함 -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○ 연구개발 목표/추진 방법의 적절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(10) - 연구 추진 전략,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함 -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음 ○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연구 목표 실현 가능성(10) - 연구개발 수행계획이 구체적이며 충실함 -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하고, 실현 가능성이 높음
	2. 연구자 역량(15)	○ 국내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(5) - 국내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음 ○ 국외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(5) - 국외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음 ○ 연구팀 조직구성의 적절성(5) - 국내·외 연구책임자로 구성된 조직 구성이 해당 연구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역량,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

	3. 국제협력(35)	○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(10) - 해당 연구 수행이 국제 공동연구로서 수행되어야할 필요성이 충분함 ○ 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(10) - 국내·외 참여 기관 간 협력 분담이 적절하게 나뉘어 있음 ○ 국외 연구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정도 및 상대기관의 기여도(15) - 국내·외 연구책임자 간 해당 연구 수행을 위해 충분한 사전적 협의 절차를 거침
	4. 성과 활용 기대 효과(20)	○ 연구 성과물의 적정성(10) -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된 성과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목표에 부합함 -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된 성과의 활용 계획이 충분히 고려됨 ○ 연구결과의 파급효과(10) - 연구결과가 국민건강증진, 공공복지실현에 기여함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